##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5 패션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ㅇ 사업목적 :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 다양화 통한 한국 패션 경쟁력 강화

o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체결일(4월 예정) ~2025. 11. 15.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디자이너 브랜드 의류 및 잡화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및 홍보비 지원

o 지원규모: 17개 내외 과제(국고지원금 총 820,000,000원)

구분		의류	잡화(가방, 신발)
지원 규모(지원금액, 과제 수)		최대 51,000,000원×15개 내외	최대 27,500,000원×2개 내외
자기부담금(총사업비의 10%)		최소 5,700,000원	최소 3,100,000원
* 아동복, 한복, 이너웨어, 수영복 등 특수목적 의상 브랜드 및 소재 관련 기			
기타사항 ** 잡화 분야는 가방, 슈즈 제품에		가방, 슈즈 제품에 한함(아이웨어, 역	악세서리 등 제외)
	*** 총사업비 = 2	지원금 + 자부담금	

- ㅇ 지원조건 : 협약 기간 내 시제품 40 스타일 이상 제작 후 국내·외 시장 출시
  - 시즌 구분 없이 브랜드별 연 1회 지원
  - 디자이너 기준 동일 사업 최대 5년 수혜 가능
- ㅇ 지원대상 : 하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의류(남성, 여성, 공용) 또는 잡화(가방, 신발) 디자이너 브랜드
  - 한국 국적의 디자이너로서 신청 회사 또는 모기업이 한국 기업인 브랜드
    - \* 디자이너가 사업체의 대표이거나 공동대표이어야 함
  - SS, FW 등 4시즌\* 이상 컬렉션을 제작 및 세일즈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기업(브랜드)
  - \* 시즌 예시: SS, FW, PS, PF
  - \*\* 세일즈 활동: 트레이드쇼, 쇼룸, 트렁크쇼, 바이어 미팅 등 국내외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 및 프로모션 활동 포함(자사몰에 업로드 하여 온라인 세일즈만 한 경우 등 개인적인 프로젝트나 비상업적 활동만 한 경우 불인정)
  - 국내·외 매출실적 2년 또는 4시즌 이상 제출 가능 기업(브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 참가기준을 충족하는 브랜드 : 공고문 하단 '참가기준' 참고

#### 신청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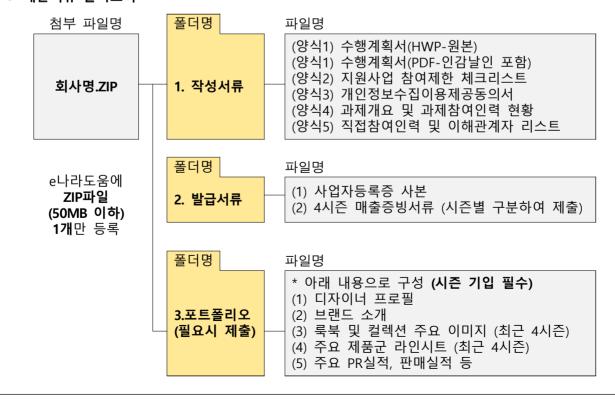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5.02.24.(월)부터 03.17.(월) 11:00까지 / 22일
  - 접수 마감 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량 증가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감 1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완료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o 신청서 접수 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ZIP'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업로드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 일체를 'ZIP'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ZIP 외 다른 확장자 압축파일은 확인 불가하며, 파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 업로드 외 메일, 우편, 현장 방문 등 다른 방법으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업로드 용량(50mb)에 제한이 있으므로 파일 용량을 최소화하여 업로드 바랍니다.
  - 파일 압축 시, MAC에서 압축한 파일은 파일 깨짐 또는 다운로드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WINDOWS 에서 압축하시거나 개별파일로 업로드 바랍니다. (개별파일 업로드 시 용량 제한 주의)
- o 신청서 접수 관련 시스템 문의 :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 ☎02-6676-5100

## 제출서류

- ※ 아래 표의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1차 서면 평가 합격 시 'ESG' 지표 관련 증빙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P.3 평가 관련 참고사항 확인)

구분	제출서류	주의사항	
<b>작성서류</b> (제공양식)	① 수행계획서	인감 날인된 <b>PDF파일과</b> HWP파일(원본)을 모두 제출	
	②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참여인력 서명 후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로 제출	
	④ 과제개요 및 참여인력현황	엑셀 양식 그대로 제출 ※ <mark>파일형식 변환 금지</mark> 스캔하여 PDF로 제출	
	⑤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외부발급 (증빙)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2025. 1. 1. 이후 발급본 ② 최근 2개년(4시즌) 매출실적 증빙서류 1) 세일즈 활동 증빙 자료 ※ (예시) 시즌별 쇼룸 계약서, 트레이드쇼 신청서, 판매 실적보고서 등 2) 매출실적 증빙 자료 ※ (예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수출실적명세서, 소득 금액증명 중 선택하여 제출		
<b>기타서류</b> (자유양식)	① 포트폴리오(하단 순서 참조하여 작성) 1) 디자이너 프로필 2) 브랜드 소개 3) 룩북 및 컬렉션 주요 이미지 (최근 4시즌) 4) 주요 제품군 라인시트 (최근 4시즌) 5) 주요 PR실적, 판매실적 등	- <b>브랜드 경쟁력 판단을 위해</b> <b>가급적 필히 제출 요망</b> - 용량 내 동영상 제출 가능 - 시즌 기입 필수 - 용량 최소화하여 업로드 (이메일 등 별도 제출 불가)	

## ㅇ 제출서류 폴더트리



# 선정 방법

### o 선정 절차

### <1단계> 서면

- 신청서 등 제출서류 평가1차 통과기준 : 70점 이상
- 1.5배수 내외 통과

### <2단계> 발표&질의응답

- 1차 서면 통과과제 대상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2차 통과기준 : **70점 이상**

### 최종 선정

- 종합점수\* 고득점순 1배수 선정, 사업비 조정심의 후 **최종 지원** 대상 및 협약금액 확정
- 예산 內 예비순위 선정 가능
- 접수 결과 지원자가 지원 규모의 2배수 미만일 경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1단계 서면 30%, 2단계 발표 7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상위 1배수를 선정, 사업비 조정심의 후 최종 지원 대상 및 협약금액 확정
- 평가위원회는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 단계별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함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계산

# o 평가 기준

- 1단계 서면 평가

평가지표	세부 지표	내용	배점	
수행기관 (10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o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10	
과제 내용 (10점)	독창성	o 작품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10	
	대중성(상업성)	o 일반 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10	
과제기획력 (50점)	기획 완성도	o 기획안 착수 가능 수준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 여부 o 타 산업 연계, 홍보 확대 등 시제품 활용 비즈니스 계획 구체성	50	
	유통 구체성	o 세부 유통 계획(온·오프라인 종합)		
사업비 (20점)	예산 편성	o (사업비 구성) 예산 항목별 규모 및 구성 적정성	20	
	조달계획	o (자부담금) 예산 조달 및 사용 계획		
참여 인력 (10점)	인력 확보	o 참여 인력 및 참여율 적정성	10	
	인력 전문성	o 유사 과제수행 경험, 학위 등 참여 인력 전문성		
합계				

## - 2단계 발표평가

평가지표	세부 지표	내용	배점	
수행기관 (15점)	재무 건전성	o 기업 신용 데이터 정보조회	5	
	추진 의지	o 과제 수행책임자의 과제수행 의지, 각오	10	
과제기획력 (15점)	과제 이해도	o 목표 시장 및 과제 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15	
	유통 구체성	o 세부 유통 계획(온·오프라인 종합)	13	
과제 내용 (20점)	독창성	o 작품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대중성 (상업성)	o 일반 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20	
	경쟁력	o 시장의 타 작품과 비교하여 경쟁 가능한 정도		
기대성과 (45점)	투자 매력도	ο 투자유치 가능성	10	
	경제적성과	o 기대되는 매출 규모	15	
	글로벌 진출 성과	o 기대되는 해외 진출 실적(판매, 서비스 등)	10	
	목표 타당성	o 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여부	10	
ESG (5점)	일자리 창출	o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2점, 미제출 0점	2	
	지역기업	o 주관기관(본사 기준) 지역기업 여부 - 수도권 외 지역 3점, 수도권(서울·인천·경기) 0점	3	
합계				

#### ㅇ 평가 관련 참고사항

- 1차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으로 [신용조사]가 진행됩니다.
  - ※ 신용조사 제출서류 : ① 기업 개요표(온라인 작성), ② 정보제공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④ 대표자 주소 확인 자료(주민등록등본 등), 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1차 서면평가 통과 업체 중 [ESG] 지표 해당 업체(일자리 창출)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추가 증빙서류 : 일자리 창출 계획(자유 양식), 고용인력 권익 보호 규약(자체 약관, 규정, 지침 등)
- [신용조사] 및 [ESG 지표]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제출 방법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각각의 서류는 **서면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미제출 또는 등록 지연 시 2차 발표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 ㅇ 지원금 지급 방법 : 2회로 분할 하여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 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지원금의 30%) 지급

# 지원요건

- o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 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 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5.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o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시제품 제작)을 5년 이상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 o <2025년 지속가능패션 제작 지원> 사업에 지원한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 디자이너 기준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 문의처

- o 사업문의 : 서현지 주임 (☎061-900-6457, shjee@kocca.kr)
- o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콘텐츠금융제도

- o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ㅇ [참고] 2025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 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 o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 기타사항

- o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o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해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o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o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 (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o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5조 및 제15조의2,「콘텐츠지원 사업관리규칙」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 o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o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제37조)
- o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제37조, 제42조)
- o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텐츠산업진흥법」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o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포함시)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와 연계하여 평가 예정임
- o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제50조)
- o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